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공동수련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94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법률의 적용대상에 ‘전임의’ 추가	4
2.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우선 지원 등	6
3.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단축 등	10
4. 전공의 선발 및 모집 절차의 공정성 등	15
5.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지정 등	19
6. 전공의 수련 관련 국가의 역할 강화	22
7. 의료기관 공동수련	27
8.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구성 변경	30
9. 수련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대한의학회 위탁 의무화	33
10.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3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 윤의원 등 24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2. 제안이유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 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뿐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13조).
- 다.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안 제11조의3).
- 라.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함.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 바.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8조).

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률의 적용대상에 ‘전임의’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의 적용대상에 기존의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 까지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 제13조의4).

현행	개정안
<u>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정의) (생략) 1. ~ 4. (생략) <신설> <신설>	<u>전공의 등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임의”란 「의료법」에 따른 전임의를 말한다. 제13조의4(전임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임의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

	<u>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 분야</u> <u>의 전임의 수련을 우선적으로 지원</u> <u>하여야 한다.</u> <u>③ 그 밖에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u> <u>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제명 중 ‘전공의’를 ‘전공의 등’으로 바꾸고, 제2조 제5호로 ‘전임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서는 ‘전임의’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른 전임의”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는 전임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임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292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임의를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전임의의 수련환경에 관한 규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전공의는 기본적인 진료역량 습득을 통해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는 교육생으로의 역할이 큰 반면, 전임의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보다 심화된 학습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대학 교수 등 향후 진로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전임의를 전공의법에 포함하여 전공의와 동등하게 보호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¹⁾

- 한편, 안 제13조의4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임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술하는 전공의의 경우와 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우선 지원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중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면서, ‘필수의료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대한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	제3조(국가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음 각 호 에 대하여-----

1) 대한병원협회, 전임의 관련 조항 삭제 의견

<u>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 1.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 2.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 다만, 대한의학회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수련전문과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²⁾ 동법 시행령은 우선지원 대상 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선지원대상 수련전문과목>

1.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2.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 전문과목

□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 외에도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우선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필수의료분야에서 수련의 기회 현상 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 현행 법령상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아직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³⁾ 다만, 대통령령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있고,⁴⁾ 2021년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에서는, 협의의 필수의료 개념을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로 규정한 바 있음.⁵⁾

201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 심혈관, 뇌혈관, 모자 의료를 분석대상으로 한 바 있음.

3) 2025년 2월 기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필수의료’라는 단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4) 동 조항은 2022년 신설되어 2024년까지 존속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된 바 있음.

5) 광의의 필수의료 개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의료”로 규정함.

이를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긴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분야는 아직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응급, 심뇌혈관질환, 신생아 및 고위험 산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94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7호)이 계류되어 있는데, 동 제정안들에서는 필수医료를 각각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영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⁶⁾

□ 필수의료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수련전문과목은 현행 법령상 전문의의 전문과목⁷⁾ 중에서 정해지는데, 현행 시행령에서 필수의료분야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가 이미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6) 2024.11.20. 소위심사결과: 계속심사

7) 「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회의 전문과목) 전문회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또한 동 시행령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 여건 및 수련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전문과목’도 포함하고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 개정 절차 없이도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을 통해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총 2,135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3.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단축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률 제2033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전공의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을 80시간(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안 제7조제1항),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의 상한을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수련병원등의 장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u>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u> <u>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u> <u>③ (생 략)</u>	<u>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u> <u>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u> <u>③ (현행과 같음)</u>
시행일: 2026년 2월 21일	

나. 검토의견

- 법률 제20330호 제7조에서는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할 수 없고(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 가능), 연속하여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2024년 2월 개정된 것으로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024년 2월 개정 이전 규정에서는(현재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개정 이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전공의의 수련시간 한도를 1주일에 80시간, 연속하여 3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을 통해 1주일에 80시간, 연속하여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 법률 제20330호 제7조 개정사항 >

현행	개정(2026.2.21. 시행)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u>80시간</u>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7조(수련시간 등) ① ----- ----- ---- <u>8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 -----, ----- -----.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u>36시간</u> 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u>40시간</u> 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 <u>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 -----, ---- ----- <u>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u> -----.

2024년 2월 당시의 개정은 신현영의원과 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형식으로 의결되었는데, 이 중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2005호) 원안은 1주 평균 수련시간 및 연속수련시간을 각각 68시간 및 24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였고, 신현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20594호) 원안은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였음.

이후 제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률상 상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으로 정리된 바 있음. 동 개정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 현행(2024년 개정 전 조항)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 규정은 정부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성·운영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수련환경개선TF)⁸⁾의 합의 내용을 2015년 법 제정 당시에 반영한 것임.

< 수련환경개선TF에서 합의한 주요 개선 사항 >

주요개선 항목 및 기준	
① 최대연속 수련시간	▶ 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② 응급실 수련시간	▶ 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③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 10시간
④ 휴일	▶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
⑤ 주당 최대 수련시간	▶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등
⑥ 당직일수	▶ 주3일 초과 금지
⑦ 휴가	▶ 연가 14일
⑧ 당직수당	▶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그러나 코로나19의 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인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전공의 단체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⁹⁾ 상기 기술한 개정(2026년 시행 예정 조항)이 이루어졌음.

- 지금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개정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법률상 상한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전공의의 적정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임.

8) 보건의료정책관(주재),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및 임원), 전공의(수련과목이 서로 다른 전공의), 대한의학회(수련교육위원), 대한병원협회(평가수련이사), 대한의사협회(학술이사)로 구성

9)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편 박차...전공의 근로환경 등 개선 초점”,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 2022.9.21.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동시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의 과도한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도의 누적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 등 전공의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진료공백이나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병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개정법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¹⁰⁾에 근거하여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 현재 71개의 수련병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주당 근무시간 단축까지 포함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참고자료1]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에 있으므로, 법률에서 상한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개선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전공의 선발 및 모집 절차의 공정성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할 의무,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및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즉시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3(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① 수련병원등은 전공의·전임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은 전공의·전임의를 모집 및 선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실 또는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불공

	<u>정 및 성차별 판단기준, 조사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과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난 2019년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공식적인 공개모집 이전에 특정 전문과에서 임의로 내정자를 두고 선발하는 소위 ‘어레인지(arrange)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¹¹⁾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선발과정에서의 차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함.¹²⁾
- 한편,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가 남녀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계 양성평등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지원과정에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여성 47.3%, 남성 18.2%로 나타났고, ‘교수 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여성 36.8%, 남성 8.0%으로 나타났음¹³⁾.
- 특히 전공의 지원과정에서 일부과에서는 여성을 원래부터 선발하지 않았다는 관행을 이유로 공공연히 여성전공의를 선발하지 않거나, 여성 전공의를 일부 비율만 뽑거나 격년으로 선발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공정한 전공의 선발 막는 대학병원 ‘어레인지 관행’”, 코메디닷컴, 2019.11.27.

12) “대전협, 인턴 선발 과정에서의 차별·불이익 강력 대응 예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 2020.1.23.

13) 한국여자의사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의료계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움 자료집, 2019.5.

□ 이에 비추어 볼 때,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근무환경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의 제시 기준 이상의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¹⁴⁾, 수련규칙 표준안에서는 ‘전공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수련규칙 표준안

제9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③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기관)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10조(임용)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병원(기관)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및 휴가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전공의 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은 수련규칙 미준수로 시정명령(제17조), 과태료(제19조제2항)의 대상이 되고,¹⁵⁾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 지정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 차등에 반영할 수 있음.¹⁶⁾
- 또한 채용상의 성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사유¹⁷⁾(500만원 이하 벌금)에도 해당함.

□ 다만, 개정안은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또는 성차별 사실에 대한 신고, 이에 따른 조사 및 시정명령의 주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이므로 불공정 조사 및 시정명령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둘 필요가 있음.

1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및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 이때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여부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¹⁸⁾

□ 또한, 현행 제17조에서 시정명령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11조의3제5항의 내용은 필요시 제17조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지정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을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18) 참고로, 수련규칙 표준안에 관한 사항(제4호), 수련규칙 이행 여부를 포함한 수련환경평가(제6호) 등은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음.

③ (생 략) 제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u>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u> 1. 2. (생 략) ② (생 략)	<u>장이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지도전문의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의3(지도전문의의 자격) ① <u>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지도전문의’란 전공의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문의¹⁹⁾를 말함. 2024년 3월 기준, 전국 248개 수

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의관계기관을 말한다.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련병원등에서 13,531명의 전공의(인턴 3,067명, 레지던트 10,464명)가 수련하고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는 20,754명이 지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련교육을 위해 일종의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책임지도전문의란 활동시간의 상당부분을 전공의 수련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²⁰⁾

□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는 수련 기관(institution), 교육자(director), 수련 프로그램(program)과 평가(evaluation) 시스템 등이며, 이 중 전체 수련프로그램을 총괄 책임지는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의 도입은 국내 수련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4년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으로 교육전담 및 책임 지도전문의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존 지도전문의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도전문의 역할 개선방안 >

구분	책임 지도전문의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	수련 지도전문의
역할	프로그램 전반적 운영·관리 책임	전공의 전담 교육	전문과목별 수련 관리
		일대일 피드백, 실습 기회 부여 및 참관·지도	
		20~30% 이상	40~50% 이상
수련업무비중(예시)			

20) (미국 사례) 책임지도전문의(PD): 수련 프로그램 총괄자, 수련업무 비중 60~80%
지도전문의(EF): 전공의 교육·평가 참여, 수련업무 비중 30~40%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책임 지도전문의에게는 수련프로그램 개발·개선 등 수련병원 내 수련교육 프로그램 구축, 수련환경 관리, 지도전문의 관리 등 수련 총괄 역할을, 교육전담 지도전문의에게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1:1 밀착 교육·지도 역할을, 그리고 수련 지도전문의에게는 개별 전공의의 전문과목별 세부 교육 역할을 분담토록 한다는 계획임. [참고자료2]

-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사업’을 통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세분하여 부여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통해 지도전문의 구분 지정 및 역할분담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비용지원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수련병원의 장 중 누구인지, 비용지원의 객체가 수련병원의 장과 지도전문의 중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전공의 수련 관련 국가의 역할 강화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공의종합계획 및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수련병원을 지정하여 해당 수련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u><신설></u>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과 이와 연계한 수련 목표, 수련 교 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 문과목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① ----- ----- -----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 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 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에 서 전공의가 제7조에 따른 수련시간 을 준수하고 수련에 충실할 수 있도 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③ (생 략)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이행 여부,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수련환경평가) ① ----- ----- -----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 제9조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① 대한의 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의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②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안 제5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 등에서 전공의 및 전 임의 수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 무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은 각 수련병원에 일임하고 있어 체계 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 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환자 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의 인력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 및 중소병원, 공공병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이 어렵고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 수련병원 지위를 상실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공의 수련기회 감소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 기회 감소로 이어져 양질의 지역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 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²¹⁾

21) 대한병원협회

□ 한편 안 제1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 다음과 같은 조문정비가 필요함.

- 안 제15조제1항제1호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을 뿐, 동 수련 프로그램의 마련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음.
- 안 제13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마찬가지로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의 마련 주체와 정의(또는 약칭) 조항이 없음.

7. 의료기관 공동수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병원등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등과 공동수련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3(공동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외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수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련의 시·도별 배치 기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고난이도·중증환자 위주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고 있어, 지역·일차의료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²²⁾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 외의 의료기관과 공동수련을 실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2) 2024년 전공의 수련비중: 상급종합병원 66.5%,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75%

□ 현재 약 70%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경험이 중심이므로 세부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17년 대한의사협회의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수련과정 뿐만 사유 중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라는 답변이 60.2%로 1순위를 차지한 바 있음.

□ 따라서 타 기관 간 공동수련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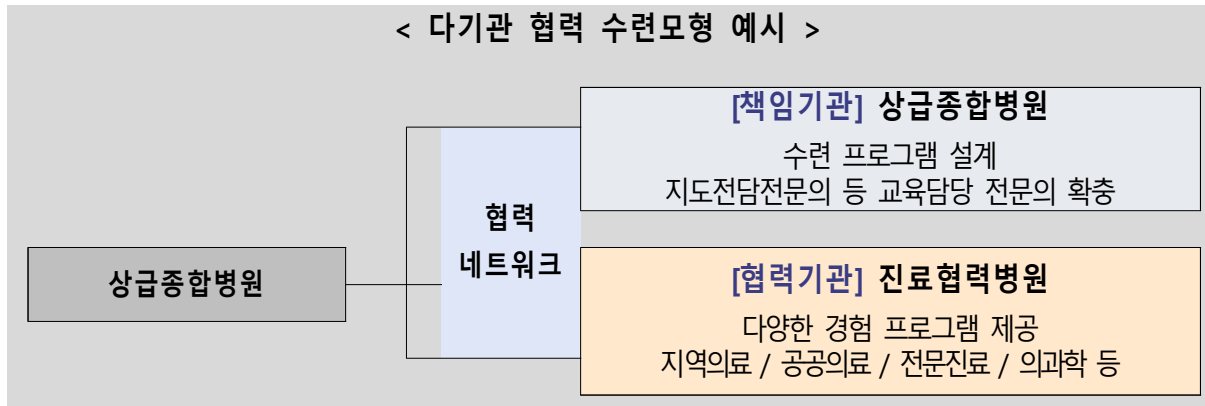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폭넓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간 ‘공동수련 시범실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5년에는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²³⁾을 도입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평가 이후에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자료3]

23) 상급종합병원과 그 외 의료기관(비수련병원 포함) 간 전공의 파견수련을 통해 다양한 임상사례 등 경험

<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공동수련 개요>

- (내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인턴 및 참여 과목 레지던트 1년차)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1~2개월로 구성된 공동수련 과정 경험
- (지원사항) ▲공동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총 3억원), ▲사업참여 국립대병원에 파견 대상 과목 정책적 정원 추가배정
- (참여현황) 강원대병원-속초·영월·삼척의료원 / 분당서울대병원-이천의료원 / 서울대병원-인천적십자병원 / 전북대병원-진안군의료원 / 충북대병원-청주의료원 등 5개 그룹

<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예시 >



- 또한 공동수련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 및 관련 단체 간 이해 상충 문제 우려²⁴⁾, 현행 파견제도 활용을 통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및 공동수련 실시가 어려운 수련병원 존재 가능성²⁵⁾ 등으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24) 대한의사협회

25) 대한병원협회

8.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및 구성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및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1. ~ 8.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u><신 설></u>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 ----- ----- ----- ----- 1.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 11.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이 법에 따른 전공의 4인

<u><신 설></u> 1. (생 략) 2. (생 략)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 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 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u><신 설></u>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5.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2. 「의료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임의 1인 3.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u><삭 제></u> <u><삭 제></u> 5.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6.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에서,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안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안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있음.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의학회가 개발한 각 수련 프로그램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려는 것으로, 각 수련 프로그램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함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안 제15조제3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 구성 변화 >

현행	개정안	비고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현행과 같음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현행과 같음	대한병원협회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이 법에 따른 전공의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삭제
신규	「의료법」제77조제5항에 따른 전임의 1인	「의료법」개정 필요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	
신규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신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보건의료정책담당 보건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현행과 같음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수련환경평가 →보건의료정책

- 참고로,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도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질 중심의 수련병원 평가’를 위해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9. 수련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대한의학회 위탁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프로그램, 수련환경평가 지표개발,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는 대한의학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 ----- ----- .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수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한의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중증도 분류에 따른 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등을 포함한 연차별 ·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신설>	6. 제13조의3에 따른 전공의 공동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신설>	7. 제13조의4에 따른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신설>	8.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신설>	9.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정부 업무 중 일부를 법률에서 특정 단체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²⁶⁾
- 둘째, 대한의학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므로 법률에서 대한의학회를 특정하여 위탁하기 위해서는 대한의학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안 제18조제3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대한의학회 위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의학회가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8조에서 각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 업무를 대한의학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전술한 안 제13조제1항의 조문정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위탁 근거 조항일 뿐이며, 특히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함.

26) 참고로, 현재 수련환경평가 업무는 대한병원협회에, 지도전문의 교육 업무의 경우 기초교육은 대한병원협회, 정기교육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에 나누어 위탁하고 있음.

10.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신중검토)

- 수련시간 단축은 최근 개정된 법률 규정이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공동수련 등은 올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예정이므로 시범사업 평가 후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및 관련 직종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함.

2) 기획재정부(비용지원규정 삭제 필요)

- 현행 제3조에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입법 우려가 있고, 재정지원 중인 개별과제를 명문화할 경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개정안 수용이 곤란함.
- 정부는 2025년부터 지도전문의 및 전공의·전임의 수당 지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실시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3) 대한의사협회 의견(신중검토)

-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여 객관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기존 위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전공의 혹은 전공의 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공동수련은 관련단체의 이해관계 상충이 예상되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전임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없이 전임의의 법적 지위만 명확히 할 경우, 전임의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현행 전임의 제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대한병원협회 의견(신중검토)

- (전임의) 전임의를 전공의법에 포함하여 전공의와 동등하게 보호해야 할 만한 신분, 지위, 교육환경 측면에서 특별히 고려될만한 사정이 부족

- (수련시간 축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전공의 수련시간을 축소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 예상

*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및 주당 평균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24년 2월에 이미 전공의법이 개정된 바 있음(시행 '26. 2. 21)

- (모집선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강하며, 시정 명령 권한의 부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의 역할별 세분화 지정 시 지도전문의 확보 어려움 발생, 전공의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비용지원의 주체를 국가로 명확화 필요

□ (인력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환자 당 의사 및 간호사 수 기준’ 추가 시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가 더 가중되며,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함

□ (공동수련) 공동수련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을 통한 제도화 여부 논의 필요

- 제도화가 필요하다면 현행 전공의 파견수련 근거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발의안에 대한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공동수련 실시를 의무화 할 경우 수련병원들의 의료 형태, 소재지역, 규모 등에 따라 공동수련 실시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그 필요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수련병원도 존재할 것임.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의 직역과 인원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므로 현행유지 필요.

* 금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위원이 편중되어 위원 구성의 불균형으로 위원회 심의 기능에 불합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므로 위원 수 적정 배분 필요

□ (위탁규정)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의무화하면 행정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저해하고 위탁기관 선정의 형평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5) 대한간호협회 의견(신중검토)

□ 본 개정안에 앞서 전공의 수련 개념 및 수련 범위 재정립, 의료시스템의 원천적 문제(의사 수 부족, 전공의 진료업무 불명확)에 대한 우선적 해결 방안 마련을 선행할 필요

-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에 대해서 먼저 전공의 수련 과정 및 업무시간 감소에 따른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후 전공의 업무 축소와 간호사 업무 과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간호법」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 및 관리, 배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후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6)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견

□ 개정안에서 “간호사 수 등” 인력기준은 「전공의법」에서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간호사의 근무환경, 인력기준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간호사에 관한 인력기준은 간호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7)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의견(찬성)

□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개발, 인력기준 개발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4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2.1.) 및 전공의법 개정*('24.2.20.)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 * (법률개정) 전공의의 주간 수련시간 및 연속 수련시간 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26.2.21. 시행)
 - ** (추진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국가의 지원)·제7조(수련시간 등)
- (경과)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5.2.)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5.22.)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업 개시(5.31.)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 → 24~30시간 범위에서 단축 운영
 - * 근무형태·스케줄 조정, 추가인력(기존, 신규) 투입 등 병원의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
- (사업기간) 1년간('24.5월~'25.4월)
- (대상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이외 과목도 시범사업 참여 가능)
- (참여기관) '25년 현재 71개 수련병원(공모 후 선정) ※ 현재 26개소 시행 중
 - * 참여기관은 '24년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제외, '25년도 전공의 추가배정 등 지원

□ 향후 계획

- (사업확대) 주당 근무시간 단축사업을 포함하여 실시('25. 上)
 - * ▲연속근무시간 : 36(+4) → 24(+4), ▲주당근무시간 : 80(+8) → 72(+8)
- (성과평가) 연속근무 및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성과평가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도화(보건복지부령 개정, '26.2월)

□ 사업 개요

- **(목적)**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기반 마련
- **(사업예산)** '25년 국비 2,332억원* (민간경상보조)
 - * 수련비용 지원 2,135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사업운영비 5억원
- **(지원대상)** 8개* 전문과목 및 인턴을 수련하는 병원(지원대상 전공의 : 7,230명('24년 정원 9,038명의 80%))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사업 추진체계)** 복지부(총괄) → 사업수행기관(참여대상 선정심사위원회 등 운영) → 수련병원(지도전문의, 전공의 등)
 -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사업 내용

- **(지도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핵심인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책임·교육전담·수련 지도전문의) 및 교육수당 지원(연24~80백만원/ '25년은 10개월분)
 - ① **(책임지도전문의)** 수련프로그램 개발·개선 등 수련병원 내 수련교육 프로그램 구축, 수련환경 관리, 지도전문의 관리 등 수련 총괄
 - ② **(교육전담지도전문의)** 개별 전공의에 대한 1:1 밀착 교육·지도
 - 전공의 역량(지식)·술기 교육 전담지도, 개별 전공의 면담, 학회 참석 관리, 발표내용 지도, 역량평가 등
 - ③ **(수련지도전문의)** 개별 전공의에게 전문과목별 필요한 세부 교육 실시
- **(술기교육 지원)** 외과계 필수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상술기 교육 비용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 **(파견수련 지원)** 전공의의 다양한 의료기관 파견 수련을 위한 운영비용(파견수당, 전문의 교육비 등) 지원
- **(전공의 교육운영 지원)** 전공의 교육활동 지원 및 수련위원회 운영 등 수련교육 운영비용 지원
- **(수련시설 개선)** 수련병원 전공의 당직실, 학습실 등 시설개선 비용 지원

참고3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공동수련 시범사업) 개요

□ 공동수련 시범사업 개요 (~'24)

- (목적) 지역사회·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통해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경험 및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모델 구축
- (사업내용) 국립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 수련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5개 국립대병원 및 7개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대 병원	참여과목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강원대병원	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인턴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인턴	인천적십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인턴	이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신경과, 인턴	진안군의료원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인턴	청주의료원

- (사업예산) '24년 3억원(국비 100%)
- (지원내용) 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비 지원, 전공의 및 공공임상교수(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개요 ('25~)

- (목적)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모형 구축

*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확대 추진(예: 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참여대상 제한 → 상급종합병원-중소·전문병원,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

- (사업내용)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거점역할인 책임기관으로서 5개 내외의 수련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련프로그램 운영

- (사업예산) '25년 11억원(국비 100%)

* 전공의 파견수당 및 파견수련 운영비 등 별도(130억원,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 (지원내용) 전공의 파견수당 및 참여병원 파견수련 운영비, 파견기관 전문의 수당,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지원